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00시 31분



목차

목차	2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	3
지원대상	3
지원범위	3
지원금액	3
구비서류	3

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	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	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	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
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	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		

지원대상

-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및 제 50조에 의한 응급입원
-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
- * 최초 진단 받을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중위소득 120%이하

지원범위

- 입원 및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- ☎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: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금액

1인 연간 450만원

구비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소득확인서,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입퇴원확인서, 통장사본 등

Yeosu Web Contents

